

의안번호	2211790
의 퇴 인	김주영 의원
회 답 일	2025. 8. 4.
추계번호	25F4021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마을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마을회 등이 주민 공동소유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 및 선박의 취득세와 마을회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는 2026년 124.3억원, 2027년 122.8억원 등 2026년에서 2027년까지 2년간 총 247.1원(연평균 123.6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 - 마을회 등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 취득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90조제1항): 2년간 -32.4억원(연평균 -16.2억원)
 - 마을회 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, 지역자원시설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90조제2항): 2년간 -214.7억원(연평균 -107.4억원)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27년, 지방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누적	연평균
마을회 등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 등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(안 제90조제1항)	-16.8	-15.6	-32.4	-16.2
마을회 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, 지역자원시설세 등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(안 제90조제2항)	-107.5	-107.2	-214.7	-107.4
합 계	-124.3	-122.8	-247.1	-123.6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0조제1항 (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)	○ 마을회 등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7.12.31.	
2	안 제90조제2항 (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)	○ 마을회 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, 지역자원시설세 등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7.12.31.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90조제1항 (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)	○	
2	안 제90조제2항 (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세수효과는 2026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- (안 제90조제1항) 마을회 등의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은 2019년 28.3억원에서 2023년 21.0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므로,

2023년 실적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취득세 감면액의 연평균 감소율을 적용하여 향후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

○ 최근 5년(2019~2023년)간 감면실적의 연평균 증감율: -7.2%

□ (안 제90조제2항) 각 세목별로 다음의 가정에 따라 개정안에 따른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를 추계

○ (재산세) 최근 5년(2019~2023년)간 감면액의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, 최근 5년간 연평균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— 최근 5년(2019~2023년)간 연평균 재산세 감면액: 101.2억원

○ (지역자원시설세) 최근 5년(2019~2023년)간 감면액이 감소하는 추세이므로, 2023년 실적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감면액 증감율을 적용하여 향후 세수효과 추계

— 최근 5년(2019~2023년)간 감면실적의 연평균 증감율: -3.3%

○ 최근 5년(2019~2023년)간 감면액이 감소하는 추세이므로, 2023년 실적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감면액 증감율을 적용하여 향후 세수효과 추계

— 최근 5년(2019~2023년)간 감면실적의 연평균 증감율: -14.7%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마을회 등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90조제1항)

(1)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

□ (제도개요) 마을회 등이 주민 공동으로 소유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

○ 감면대상: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¹⁾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의 취득

○ 적용기한: (현행) 2025년 12월 31일 → (개정안) 2027년 12월 31일

□ (감면실적) 마을회 등의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은 2019

1)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함
(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시행령 제43조)

년 28.3억원에서 2023년 21.0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

- 최근 5년(2019~2023년)간 감면실적의 연평균 증감율: -7.2%

[표 2] 마을회 등 주민 공동소유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 추이: 2019~2023년
(단위: 억원)

구 분	2019	2020	2021	2022	2023
감면실적	28.3	24.1	23.8	23.3	21.0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년도

(2) 추계방법 및 추계결과

- (추계방법) 2023년 실적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취득세 감면액의 연평균 감소율(-7.2%)을 적용하여 향후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

[표 3] 마을회 등이 취득한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 추정: 2026~2027년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6	2027	연평균 감소율
감면액 추정	16.8	15.6	-7.2%

- (추계결과) 개정안에 따라 마을회 등이 소유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할 경우, 취득세는 2026년 16.8억원, 2027년 15.6억원 등 2026년에서 2027년까지 총 32.4억원(연평균 16.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27년, 취득세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6	2027	누적	연평균
마을회 등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 등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(안 제90조제1항)	-16.8	-15.6	-32.4	-16.2

나. 마을회 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, 지역자원시설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90조제2항)

(1)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

□ (제도개요) 마을회 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, 지역자원시설세와 마을회 등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감면

-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감면대상: 마을회 등이 소유한 부동산
- 주민세 감면대상: 마을회 등에 대한 사업소분과 종업원분
- 적용기한: (현행) 2025년 12월 31일 → (개정안) 2027년 12월 31일

□ (감면실적) 마을회 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, 지역자원시설세 및 마을회 등에 대한 주민세 감면실적은 다음과 같음

- (재산세) 2019년 112.2억원에서 2020년 96.5억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22년 103.8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, 2023년 95.0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재산세 감면액의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음

[표 5] 마을회 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실적 추이: 2019~2023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19	2020	2021	2022	2023
감면실적	112.2	96.5	98.7	103.8	95.0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년도

- (지역자원시설세) 2019년 7.2억원에서 2023년 6.3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임

－ 최근 5년(2019~2023년)간 감면실적의 연평균 증감율: -3.3%

[표 6] 마을회 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실적 추이: 2019~2023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19	2020	2021	2022	2023
감면실적	7.2	7.1	7.0	7.2	6.3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년도

- (주민세) 2019년 1.7억원에서 2023년 0.9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임
 - 최근 5년(2019~2023년)간 감면실적의 연평균 증감율: -14.7%

[표 7] 마을회 등에 대한 주민세 감면실적 추이: 2019~2023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19	2020	2021	2022	2023
감면실적	1.7	1.6	1.3	0.9	0.9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년도

(2) 추계방법 및 추계결과

□ (추계방법) 각 세목별로 다음의 가정에 따라 개정안에 따른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를 추계함

- (재산세) 최근 5년(2019~2023년)간 감면액의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, 최근 5년간 연평균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최근 5년(2019~2023년)간 연평균 재산세 감면액: 101.2억원
- (지역자원시설세) 최근 5년(2019~2023년)간 감면액이 감소하는 추세이므로, 2023년 실적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감면액 증감율(-3.3%)을 적용하여 향후 세수효과 추계

[표 8] 마을회 등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액 추정: 2026~2027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6	2027	연평균 감소율
감면액 추정	5.7	5.5	-3.3%

- (주민세) 최근 5년(2019~2023년)간 감면액이 감소하는 추세이므로, 2023년 실적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감면액 증감율(-14.7%)을 적용하여 향후 세수효과 추계

[표 9] 마을회 등에 대한 주민세 감면액 추정: 2026~2027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6	2027	연평균 감소율
감면액 추정	0.6	0.5	-14.7%

- (추계결과) 개정안에 따라 마을회 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,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는 2026년 107.5억원, 2027년 107.2억원 등 2026년에서 2027년까지 총 214.7억원(연평균 107.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0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27년, 지방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누적	연평균
마을회 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, 지역자원시설세 등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(안 제90조제2항)	-107.5	-107.2	-214.7	-107.4
- 재산세	-101.2	-101.2	-202.4	-101.2
- 지역자원시설세	-5.7	-5.5	-11.2	-5.6
- 주민세	-0.6	-0.5	-1.1	-0.6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장설희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설희	02-6788-4836	shjang@assembly.go.kr